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2. 7. 5.>

# 훈련대상물자 멸실·훼손 통지

| 업 체 명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물자의 소유자(점유자)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| | 생년월일 | |

| 물자의 품 명 | 물자의 소재지 | 규격 또는 구조 | 단 위 | 수 량 | 멸 실· 훼 손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일 시 | 원 인 | 멸실 또는 훼손 장소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·훼손되었음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